

제323회 임시회
2013. 9. 1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봉희 의원 외 6인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4일

-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
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금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의 이해(利害)와 충돌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